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와 심사운영과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지원과와 병역판정검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운영지원과 명칭은 검사지원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인력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 직군 정원 3명(9급 3명)은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은 행정직렬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2.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지원”을 “검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장”을 “검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행정사무”를 “행정사무 및 의료지원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 및 제2호 중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각각 “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 중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각각 “신체검사”로 한다.

5. 병리·방사·심리검사(이하 ‘의료지원 분야’) 계획의 수립 및 의료지원 분야 검사 실시

6.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7. 의료지원 분야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제43조의2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7.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296”을 “294”로, 일반직 계 “292”를 “290”으로, 행정주사보 “48”을 “47”로,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96”을 “294”로, 일반직 계 “292”를 “290”으로, 행정주사보

“47”을 “4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51”을 각각 “49”로, 행정주사 “6”을 “5”로,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51”을 각각 “49”로, 행정주사 “7”을 “6”으로,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88”을 각각 “1,474”로, 행정주사 “208”을 “206”으로, 행정주사보 “263”을 “260”으로, 행정서기 “305”를 “302”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301”을 “300”으로, 방호서기보 “12”를 “11”로, 공업서기보 “8”을 “10”으로, 운전서기보 “21”을 “2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89”를 각각 “1,475”로, 행정주사 “223”을 “221”로, 행정주사보 “274”를 “271”로, 행정서기 “312”를 “309”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9”로, 행정서기보 “269”를 “268”로, 방호서기보 “12”를 “11”로, 공업서기보 “8”을 “10”으로, 운전서기보 “21”을 “2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7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운영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 이 규칙 시행으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생 략)	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u>운영</u> <u>지원</u> 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검사</u> <u>지원</u> ----- ----- ----- -----.
③ <u>운영지원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u>검사지원과</u> 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4. 삭 제	
<신 설>	5. <u>병리 · 방사 · 심리검사(이하</u> <u>‘의료지원 분야’)</u> 계획의 수립 및 의료지원분야 검사 실시
<신 설>	6. <u>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u> <u>및 관리</u>
<신 설>	7. <u>의료지원 분야와 관련한 자료</u> <u>등 기록 · 유지 및 관리</u>
5.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동을 위한 <u>행정사무</u> 에 관한 사항	8. ----- -- <u>행정사무 및 의료지원</u> <u>분야</u> -----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u>신체검사 및 심리검사</u> 계획의 수립	1의2. <u>신체검사</u> ----- -----

1의3. (생 략)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실시

3. (생 략)

4.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
장 확인, 대면 조사 등 사실조
사 계획 수립·운영

8.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서 작성·통지

9. · 10. (생 략)

④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3. (현행과 같음)

2. 신체검사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신체검사-----

--

5의2. 신체검사 -----

6. -----
-- 신체검사-----

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
· 소송에 관한 사항

<삭 제>

8. · 9.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④ -----
-----.

1. ~ 5. (생략)

6.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

· 소송에 관한 사항

7. (생략)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
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 제7호와 같음)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행정서기보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96</u>		<u>294</u>	-2	
일반직	.		.		.		
계	.		.		.		
			<u>292</u>		<u>290</u>	-2	
행정주사보	.		.		.		
	.		.		.		
			<u>48</u>		<u>47</u>	-1	
사무운영서기보	.		.		.		
	.		.		.		
			<u>11</u>		<u>10</u>	-1	
	.		.		.		
	.		.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96</u>	• <u>294</u>	-2
일반직 계	• <u>292</u>	• <u>290</u>	-2
행정주사보	• <u>47</u>	• <u>46</u>	-1
사무운영서기보	• <u>11</u>	• <u>10</u>	-1
•	•	•	
•	•	•	

[별표 5]

병무민원상답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1	49	-2
일반직 계	51	49	-2
행정주사	6	5	-1
행정주사보	11	10	-1

[별표 5의2]

병무민원상답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1	49	-2
일반직 계	51	49	-2
행정주사	7	6	-1
행정주사보	11	10	-1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88</u>	<u>1,474</u>	-14
일반직 계	<u>1,488</u>	<u>1,474</u>	-14
•	•	•	
•	•	•	
행정주사	<u>208</u>	<u>206</u>	-2
•	•	•	
•	•	•	
행정주사보	<u>263</u>	<u>260</u>	-3
•	•	•	
•	•	•	
행정서기	<u>305</u>	<u>302</u>	-3
•	•	•	
•	•	•	
전산서기 또는	<u>11</u>	<u>10</u>	-1
방송통신서기			
•	•	•	
•	•	•	
행정서기보	<u>301</u>	<u>300</u>	-1

·	·	·	
·	·	·	
방호서기보	<u>12</u>	<u>11</u>	-1
공업서기보	<u>8</u>	<u>10</u>	+2
·	·	·	
·	·	·	
운전서기보	<u>21</u>	<u>20</u>	-1
·	·	·	
·	·	·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89	1,475	-14
일반직 계	1,489	1,475	-14
행정주사	223	221	-2
행정주사보	274	271	-3
행정서기	312	309	-3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9	-1
행정서기보	269	268	-1

·	·	·	
·	·	·	
방호서기보	<u>12</u>	<u>11</u>	-1
공업서기보	<u>8</u>	<u>10</u>	+2
·	·	·	
·	·	·	
운전서기보	<u>21</u>	<u>20</u>	-1
·	·	·	
·	·	·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